
'24년 블록체인 기술검증(PoC) 지원 사업 공모안내서

2024. 2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Ministry of Science and ICT



목 차

I. 사업 개요	1
1. 사업목표	2
2. 사업내용	2
3.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	3
4. 사업 추진절차	4
II. 사업 지원내용	5
1. 지원내용	6
2. 사업신청 및 접수	9
3. 세부일정 및 절차	13
4. 사업관리	13
5. 문의처	16
III. 사업 선정방안	17
1. 평가절차	18
2. 평가방법 및 기준	18
3. 기타 유의사항	23

[별첨] 전산접수 매뉴얼

I

사업 개요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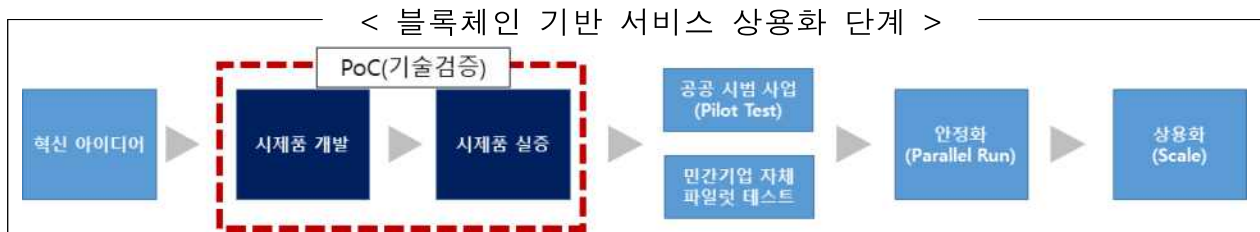
사업목표

- 성장단계에 돌입한 블록체인 기술·서비스의 산업 특이점 구현을 위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성능 검증 등을 통해 신규 먹거리 창출 기회 모색
 -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돌입한 블록체인 산업진흥정책에 부합하고 잠재력이 높은 블록체인 기술·서비스에 대한 기술 개발 적정성 검증
 -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다종(多種) 산업간 초연결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블록체인 시장 선점 기반 구축

2

사업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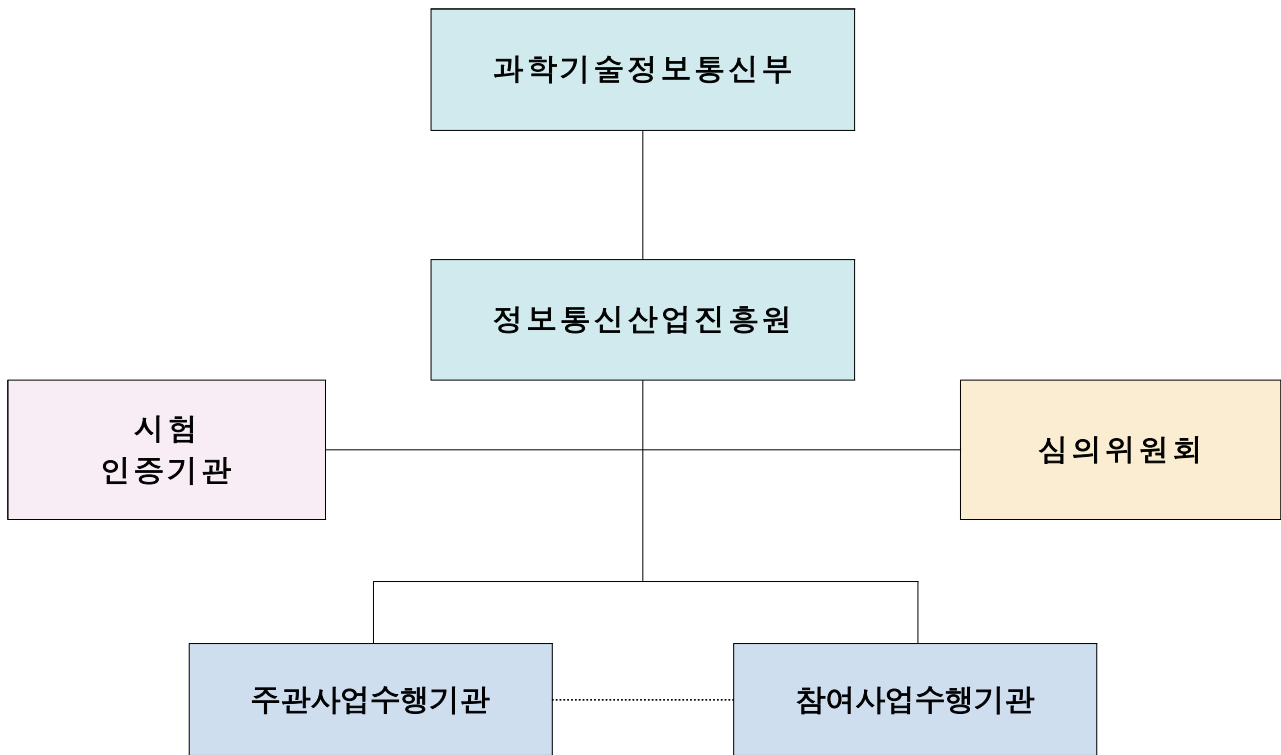
- 블록체인 기술검증(PoC) 지원



- (지원기간) 협약체결일 ~ '24.11.30.
- (지원대상) 블록체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·중소·중견 기업 등(콘소시엄 구성 필수)
- (지원규모) 과제당 최대 3.75억원 이내, 8개 과제 내외
 - *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60%를 지급하고, 중간점검 후 순차적으로 40% 지급
- (지원내용) 블록체인 기반 융합 기술·서비스 모델 등에 대한 기술검증 비용 지원
 - * 블록체인 기술·서비스 모델 기획, 시제품 설계 및 구현, 시범 시스템의 기술 구현 가능성 및 안정성, 보안성 등에 대한 검증 비용 지원
- (선정방식) 서류검토, 서면평가, 기술역량 평가, 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 과제 선정
- (지원분야)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전 분야
 - 블록체인 기술로 새로운 경제적·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Web3, AI, 환경, 에너지, 융합 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 분야

3

추진체계 및 주요역할



구 분	주 요 업 무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총괄기관)	0 정책 총괄 및 관리 0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
정보통신산업진흥원 (전담기관)	0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0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0 사업관리, 예산집행 및 정산, 성과평가
심의위원회	0 사업 세부 과제별 사업계획 검토 및 확정 0 사업 추진범위, 예산 등 심의조정 및 확정
시험인증기관	0 기술의 신뢰성·기능성에 대한 검증
주관·참여기관	0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0 과제 진행현황 및 착수·중간·결과보고 0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

4

사업 추진절차



* 사업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Ⅱ

사업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지원방법	○ 자유공모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	○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·중소·중견 기업 등(콘소시엄 구성 필수) * 콘소시엄 구성에 참여(수요)기관 1개 이상 참여가 필수이며, 참여(수요)기관 없이 참여(공급)기관만 참여하는 경우는 콘소시엄 구성 요건 미충족 * 대기업은 기술검증 주관기관으로만 참여가능하며, 이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(참여공급기업)과 콘소시엄을 구성해야 함(단, 중소기업이 참여수요기업으로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콘소시엄 구성 불인정) * 기술검증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술공급기업이 대표 주관기관으로 참여 * 복수의 기업이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공급기업이 대표 주관기관으로 참여																					
	◆ 콘소시엄 구성(안)					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역할</th><th>자격요건</th><th>기관수</th><th>주요역할</th></tr><tr><td>주관기관</td><td>공급기관</td><td>대·중소·중견기업</td><td>1개 (*필수)</td><td>블록체인 기술을 보유*하고 있는 기업으로 과제 전체를 총괄적으로 수행 * PoC와 연계되는 MVP기술을 개발 및 보유한 기업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참여기관</td><td rowspan="2">공급기관</td><td>중소·중견기업</td><td>필요시</td><td rowspan="2">블록체인 기술을 보유*하고 있거나 기술협력기관(중소·중견기업)으로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·서비스 개발에 참여</td></tr><tr><td>대학,연구소 등 기술협력기관</td><td>필요시</td></tr><tr><td>수요기관</td><td>대·중소·중견기업, 지자체/국가기관/공공기관, 기타 비영리기관</td><td>1개 이상 (*필수)</td><td>블록체인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·기관으로 실증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</td></tr></table>	구분	역할	자격요건	기관수	주요역할	주관기관	공급기관	대·중소·중견기업	1개 (*필수)	블록체인 기술을 보유*하고 있는 기업으로 과제 전체를 총괄적으로 수행 * PoC와 연계되는 MVP기술을 개발 및 보유한 기업	참여기관	공급기관	중소·중견기업	필요시	블록체인 기술을 보유*하고 있거나 기술협력기관(중소·중견기업)으로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·서비스 개발에 참여	대학,연구소 등 기술협력기관	필요시	수요기관	대·중소·중견기업, 지자체/국가기관/공공기관, 기타 비영리기관	1개 이상 (*필수)	블록체인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·기관으로 실증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
	구분	역할	자격요건	기관수	주요역할																	
	주관기관	공급기관	대·중소·중견기업	1개 (*필수)	블록체인 기술을 보유*하고 있는 기업으로 과제 전체를 총괄적으로 수행 * PoC와 연계되는 MVP기술을 개발 및 보유한 기업																	
참여기관	공급기관	중소·중견기업	필요시	블록체인 기술을 보유*하고 있거나 기술협력기관(중소·중견기업)으로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·서비스 개발에 참여																		
		대학,연구소 등 기술협력기관	필요시																			
	수요기관	대·중소·중견기업, 지자체/국가기관/공공기관, 기타 비영리기관	1개 이상 (*필수)	블록체인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·기관으로 실증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																		
* 참여(공급)기관 : PoC 수행과 연관된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*하거나, PoC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**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참여(공급)기업은 해당 기술에 대한 증명 필요 * PoC과제와 연계된 블록체인 기술 보유 기관 ** 데이터 취합, 정리, 분석 및 제공, 홍보, 모객, 기존 개발 플랫폼·보유기술·서비스, 국내외 마케팅, 홍보, 보고서 작성, 자료조사 등에 대한 제공 등은 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음																						
* 참여(수요)기관 : 대·중소·중견기업, 지자체/국가기관/공공기관, 기타 비영리기관 - 서비스 시범검증을 위해 실증 테스트베드 환경을 구축·제공 및 시범서비스를 추진하여야 함 -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실제 상용화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*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하며,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참여 가능(창업예정기업 불가)																						
지원기간	○ 협약체결일 ~ 2024.11.30																					
지원규모	○ 과제당 3.75억원 이내, 8개 과제 내외 * 평가 결과 및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 범위 및 예산 조정 가능																					
지원조건	○ 총 사업비의 50%(대기업), 70%(중견), 75%(중소)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				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○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융합 모델에 대한 기술 검증 비용 지원 *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기획, 시제품 설계 및 구현, 시범 시스템의 기술 구현 가능성 및 안정성, 보안성 등에 대한 기술 검증 비용 지원																					

□ 지원조건

- (민간매칭)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·기관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(현금·현물)을 하여야 함
- (콘소시엄) 정부지원금은 주관기관에게 지원하며, 참여(공급)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필수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여, 참여(수요)기관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※ “총사업비 = 정부출연금 + 민간부담금” 으로 구성되며,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

◆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

1. 출연금 등 지원기준

중소기업	중견기업	공기업 및 기타기업	그 외의 경우
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5%이내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0%이내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50%이내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100%이내

[참고] 기업규모 구분 (대·중소·중견·공기업·기타기업 구분은 다음의 정한 기준을 따름)

1. “중소기업”이라 함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(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)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2. “중견기업”이라 함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.
3. “공기업”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임
4. “대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」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」, 「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」, 「금융 및 보험,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」 등을 말한다.
5. ‘기타기업’이란 위 1)중소기업, 2)중견기업 3)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

2.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

중소기업	중견기업	공기업 및 기타기업	그 외의 경우
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%이상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%이상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%이상	필요시 부담

1.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연도별 협약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 해야함
2. “중소기업”이라 함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(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)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3. “중견기업”이라 함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.
4. ‘공기업’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임
5. “대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」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」, 「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」, 「금융 및 보험,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」 등을 말한다.
6. ‘기타기업’이란 위 1)중소기업, 2)중견기업 3)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

□ 사업비 산정기준

- 사업 수행 기간은 7개월 기준으로 산정
- 국외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10%를 초과할 수 없음
- 블록체인 컴퓨터 자원(온오프라인 서버 등)은 '공공요금 및 제세' 항목으로 산정

□ 블록체인 컴퓨팅 자원(온오프라인 서버 등) 산정 기준

- 기술검증 사업 수행에서 활용하는 노드수는 최소 4개 이상으로 수행
- 블록체인 기술검증을 수행하는 과제는 프라이빗(Private) 네트워크 또는 자체 메인넷으로만 과제를 수행해야 함
-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필요한 컴퓨팅자원* 비용은 4천만원(6개월 기준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4천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에서 필수사업비로 인정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- ※ (컴퓨팅 자원) 온오프라인 서버(블록체인, 웹, api, 암호화장비(VPN))로 해당 서버에 대한 세부내역(CPU, HDD, 메모리 등)이 포함된 세부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제외

□ 선정 및 협약 제외대상

○ 지원사업 선정 제외대상

- 「NIPA 블록체인 기술검증(PoC) 지원사업」에 일정횟수(총 3회)의 과제 지원을 받은 기관(주관/참여)들은 지원을 제한하는 블록체인 기술검증 졸업제 적용
- 주관/참여기관 및 과제 참여인력이 특수 관계(기업대표 자녀와 배우자, 친인척 임원, 대주주 등)인 경우 또는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인 경우,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우리원 타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·서비스를 활용하거나 「블록체인 기술검증(PoC) 지원사업」에 제출한 동일 과제로 '24년 우리원 타 지원사업에 지원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블록체인 지원사업('18년~'24년)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·서비스를 활용한 과제(기술 고도화, 산업 분야 변경 등)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블록체인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api, 모듈, UI/UX 등의 개발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에서 단순히 dApp, DID에 대한 기술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정의상의 '가상자산'에 관련한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(단, 대표이사가「청년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,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예외)

○ 과제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·협약 취소 가능 대상

- 제시한 최소실행가능제품(MVP)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
- 지원과제(주관/참여/수요)와 유사과제로 접수마감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(기 지원 받은 과제와 분야 또는 영역 등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 하며, 주관기관에서 중복이 아님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할 시 유사과제 범주에 포함)
-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블록체인 지원사업('18년~'24년)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·서비스를 활용한 과제(기술 고도화, 산업 분야 변경 등)

- 주관/참여기관 및 과제 참여인력이 특수 관계(기업대표 자녀와 배우자, 친인척 임원, 대주주 등)인 경우 또는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인 경우
- 우리원 타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·서비스를 활용하거나 「블록체인 기술검증 (PoC) 지원 사업」에 제출한 동일 과제로 '24년 우리원 타 지원사업에 지원한 경우
-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-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
- 타기관의 IPR(지식재산권)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, 참여기관 대표 등이 채무불이행자인 경우
-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

□ 기타 사항

- (결과물 활용) 과제 지원받는 기업은 성과 확산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해야 함(컨퍼런스, 성과공유회, 만족도 및 성과 조사 등)
- 기술검증시 연계된 MVP에서 파생된 “공통기능성 평가” 또는 “자체평가 항목”이 최소한 5개 이상이어야 하며, 결과보고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

2 사업신청 및 접수

□ 사업설명회 개최

- '24. 3. 8(금) 14:00, 서울 오픈업센터(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0길 83 우제빌딩 2층)
- * 상기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공고기간: '24.2.26(월) ~ 3.27(수) 15:00까지(www.nipa.kr 알림마당 - 사업공고 참조)

○ 접수기간: '24.3.8(금) 13:00 ~ 3.27(수) 15:00까지

○ 신청 방법

- 서류 제출 전 신청자격, 제출서류, 신청양식, 작성내용 등 사전에 작성 요령에 대해서 확인 최종 제출 요망

- NIPA 사업지원스마트시스템(SMART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*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

* NIPA SMART시스템(<https://smart.nipa.kr>) > 로그인(과제 총괄책임자) > “접수” > “과제접수” > “2024년 블록체인 기술검증(PoC) 지원사업” > “과제신청” 클릭

* 세부내용은 별첨 전산접수 매뉴얼 참조

□ 사업신청서 전산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

<사업신청서 전산접수시 유의사항>

- 사업신청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주관기관 수행책임자(총괄책임자) 명의로 가입
-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과 사업계획서 직인 날인 후 제출
- 사업신청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하시기 바라며,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, 입력내용은 사업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
-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 진행
- 전산접수는 사업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, 최종저장이 되어야 마무리 되며 최종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.

※ 전산접수 마감시한 : '24. 3. 27(수), 15:00까지

※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 불가하며,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 2~3일 전에 접수완료 추천

※ 전산 시스템 문의 : ☎ 070-5151-8239

□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

구 분	첨부 서류 목록
제출서류	< 공통(주관, 참여) 제출서류 > ○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○ 사업신청서(주관에서 대표로 제출) ○ 사용인감계(주관에서 대표로 제출) ○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○ 협약서(과제수행기관 참여의사, 신청자격, 중복지원, 특수관계, 현금출자납입(해당시), 설문조사 업무협조) ○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○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○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(해당시) ○ 주관기관, 참여기관의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비영리 단체(고유번호: 82) 및 대기업을 증빙하는 증빙 서류

	※ 접수마감일 현재 확인서(증빙서류) 기간이 유효하여야 함(기한 만료된 인증서(증빙서류)는 서류 미제출로 간주)) ○ 주관기관, 참여기관의 재무제표(최근 3년) ○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○ 4대 보험완납증명서 ○ NTIS 사업 중복성 검사 인증서(PDF) ※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(www.ntis.go.kr → 과제 참여 → 유사과제) ○ 국가 R&D성과 연계 증빙서류(개요, 증빙자료 등) ○ 기술검증 기술역량 증빙 자료(시스템 환경 기술서, 기보유한 블록체인코드 설계서, 기보유한 블록체인 기술·서비스 참고자료, 시스템 기능/성능 요구사항, 최소실행기능제품(MVP) 증명자료) ○ 신청 과제 자기점검표
--	---

- * 모든 서류는 **원본대조필 날인 후 전산접수**하며,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* 사업신청서는 **주관 및 참여(공급·수요)기업들의 필히 직인 날인 후**, 주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**50페이지 이상**으로 작성하여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
- * 최소실행제품(MVP) 증빙서류는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블록체인 익스플로러, 인터페이스, 서비스가 스마트 컨트랙트(메안넷(비전포함) 또는 BaaS 연계 유무 등에서 구동되고 있다는 증빙 서류 제출

※ 중요

- **“블록체인기술검증_지원과제명_주관기관명”** 폴더를 생성하고, 하위폴더에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폴더를 따로 생성하여, 제출서류(파일) 저장 및 제출
- 서류 제출시 파일(폴더)명을 아래와 같이 작성한 뒤, 압축(zip)하여 제출

필수	0. 회사명_공통_제출서류체크리스트
필수	1. 회사명_공통_사업신청서(직인 날인)
필수	2. 회사명_공통_인감증명서(사용인감계)
필수	3. 회사명_공통_사업자등록증
필수	4. 회사명_공통_확약서(과제수행기관 참여의사, 신청자격, 중복지원, 특수관계, 현금출자납입, 설문조사 업무협조)
필수	5. 회사명_공통_참여인력참여확인서
필수	6. 회사명_공통_개인정보이용동의서
필수	7. 회사명_공통_외부위촉인력참여동의서
필수	8. 회사명_공통_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(대기업·비영리기관 증빙할 수 있는 서류)
필수	9. 회사명_공통_재무제표(최근 3년)
필수	10. 회사명_공통_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
필수	11. 회사명_공통_4대보험 완납증명서
필수	12. 회사명_공통_NTIS사업중복성검사인증서
선택	13. 국가 R&D성과 연계 증빙서류(개요, 증빙자료 등)
필수	14. 기술검증(PoC) 기술 역량 증빙자료 (시스템 환경 기술서, 기보유한 블록체인 코드설계서, 기보유한 기술 서비스 참고자료, 시스템 기능/성능 요구사항 등)
필수	15. 회사명_공통_자기점검표
선택	16. 위서류(0~15번) 외 제출하는 참고자료 일체

3

세부일정 및 절차

단 계	내 용
사업 공고	○ 사업 지원 계획 공고 : '24. 2. 26(월) - 정보통신산업진흥원(www.nipa.kr) 홈페이지 게재 ○ 사업설명회 - '24. 3. 8(금) 14:00, 서울 오픈업센터(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0길 83 우제빌딩 2층)
사업신청서 접수	○ 소정 양식에 의거한 “사업신청서” 접수 - 공고기간: '24. 2. 26(월) ~ 3. 27(수) 15:00까지 - 전산접수: '23. 3. 8(금) ~ 3. 27(수) 15:00까지
적합성 검토	○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누락,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※ 검토 항목: 접수내역, 신청자격,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
서면 평가	○ 평가일자: '24. 4월 ○ 평가방법: 서면 평가 ※ 평가결과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
기술역량 평가	○ 평가일자: '24. 4월 ○ 평가방법: 발표 평가
발표 평가	○ 평가일자: '24. 4월 ○ 평가방법: 발표 평가
우선협상과제 확정	○ 우선협상과제 확정: '24. 4월
심의위원회	○ 사업계획, 예산, 추진범위 등 심의·조정: '24. 5월
협약체결	○ 협약 체결 : '24. 5월 - 사업범위/사업비검토 및 조정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협약체결

*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4

사업관리

□ 과제 수행 관리

- 과제 종료 시 과제 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, 산출물 및 시험성적서,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, 회계검토 보고서 및 NIPA 요청자료 제출
 - ※ 세부 제출 자료는 과제 특성에 따라 추후 통보
- 중간보고 시 중간보고서 및 NIPA 요청자료 제출

- 과제 수행 도중에 NIPA에서는 현장실사 및 품질관리점검을 필요시 시행할 예정이며, 주관기관은 진행현황보고서, 사업비 사용 중간실적 등을 제출해야 함
-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
 - 주관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
 -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 - 사업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,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
 -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위원회, 중간보고,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
 -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및 부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
- 과제 수행 변경
 - 과제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·요청할 수 있으며, 관리기관의 승인 필요(협약종료 1개월 이전)

□ 결과물(서비스·제품) 검증

-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비영리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* 획득 및 제출(완료보고서 제출 시)
 - ※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 : KOLAS 인정 획득 기관
 - ※ 검증항목은 공통(기능성 및 성능)·자체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출(별첨 사업신청서 참고)
- 사업자는 기능 요구사항 관련 시험항목 선정을 위해 시험인증기관과 상호 협의 가능
- 사업자는 비기능 요구사항(보안성, 성능 등) 관련 시험항목 선정을 위해 시험인증기관이 제공하는 평가기준 반영
- 사업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**90일 이전**까지 시험인증기관과 시험항목 협의 및 계약완료

- 사업자는 시험인증기관이 시험 수행 시 필요한 시험환경(H/W, S/W), 시험도구 및 시험지원 인력 제공
- 협약종료 전, 본 기술검증 결과물에 대한 사업적 성과가 있을 경우,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결과 보고서 제출(단, 성과 도출을 위해서 본 협약 종료이후에도 본 기술검증 결과물을 바탕으로 개발, 마케팅 등 추가 활동이 필요한 경우, Upgrade 및 중·단기 운영 세부계획서를 결과 보고서 제출)

□ 과제 수행 보고 및 평가

○ 중간 보고

- 제출 받은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간보고회 개최
- 중간점검(중간평가 등)시 사업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기업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음

○ 결과 평가

- 과제 완료시 제출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“성공” 또는 “실패”로 평가됨
- 90점 이상(“매우 우수”), 80~89점(“우수”), 60~79점(“보통”)은 “성공”으로 평가
- 60~69점(“미흡”), 60점미만(“매우미흡”)으로 “실패”로 평가받은 과제는 제재 등급을 기준으로 제재 여부, 제재대상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을 구분하여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조치
 - ※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- 평가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은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

□ 적용 규정

구분	내용
· 사업비 구성 및 정산	·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·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
· 평가 및 성과관리	·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·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
· 기타	·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「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」 「공공재정 환수법」 등을 적용

□ 기타 규정사항

- 제출된 일체의 서류 및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과제신청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
- 수행기관(주관·참여) 과제수행 중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, 문제 발생시 수행기관에서 책임짐을 원칙으로 하며, 개인정보보호 위반시 지원사업에서 제재 될수 있음

5 문의처

구분	담당자 (이메일)	TEL
사업관련 내용 문의	공개SW팀 안지환 책임(jasonahn1202@nipa.kr) 공개SW팀 정기수 수석 (gjung@nipa.kr)	043-931-5382 043-931-5372
전산등록 관련 문의	유지보수팀(smart@nipa.kr)	070-5151-8239

Ⅲ

사업 선정방안

1 평가 절차

□ 선정절차

- 사업신청서의 적합성검토(서류검토 등) 및 서면·블록체인 기술역량·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후,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

구분	평가자	평가 방법	비고
사전검토	내부검토	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누락,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	·제출서류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을시 탈락
서면평가	평가위원회 (외부전문가)	제출된 사업신청서 평가	· 산술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※ 16개 과제 선정
기술역량 평가	평가위원회 (외부전문가)	사업신청서·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 발표 및 기술시연	· 서면평가 통과 과제(16개) ※ 주관 및 참여기관 대상
발표평가	평가위원회 (외부전문가)	사업신청서 및 주관기관/참여기업의 과제책임자발표	· 서면평가 통과 과제(16개) · 기술역량평가와 발표평가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

2 평가방법 및 기준

① 서류검토(적합성 검토)

- (개요)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누락,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
- (평가대상) 접수과제
- (검토방법) 사업신청서, 첨부·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,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*을 통해 내부적으로 검토 진행
* NTIS 사업 중복성 검사 인증서(PDF) 제출 필수
- (주요 검토항목) 접수내역, 신청자격,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

구분	검토항목
접수	○ 전산접수 완료 후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류 누락 여부
관련 규정	○ 과제 중복 여부 (* 기 지원분야 동일 서비스모델 및 유사·중복과제 제외 등)
	○ 타 정부사업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완납 여부
	○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 제한 여부 (대표자,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)
	○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

* 제출서류 누락 시,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

- **(과제 중복여부 확인)** 주관기관과 참여공급기관은 블록체인 관련 정부과제 수행이력을 제출(5년간)해야 하며, 제안한 과제가 기존 수행한 과제와 동일과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책임은 주관기관에게 있음
 - 동일 또는 중복여부를 판단하여 협약 이후 확인될 경우 협약 취소 및 사업비 전액 환수
 - 기 지원받은 내용과 신규전환 내용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함을 증명하였을 경우 참여가 가능하나, 타당성을 증명할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음

② 선정평가

1) 서면평가

- **(개요)** 사업신청서 등에 의한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
- **(평가대상)**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
- **(평가방법)**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
 -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
 - ※ 통과기준은 평가점수 70점 이상
- **(평가위원)** 관련분야 산·학·연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과제 선정회의 서면평가를 통해 16개 이내 선정
 - ※ 평가는 전자평가를 실시하며, 평가위원 선정은 NIPA 평가지원팀에서 일괄 선정하여 위촉
 - ※ 서면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

- (평가기준)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MVP 구체성·적절성, 기술검증사업 수행 역량 및 사업 수행의지, 기술검증의 구체성·달성가능성, 기대효과 및 상용화 가능성 등

평가 구분	평 가 항 목 및 기 준		평가 점수
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기술 준비도 (20)	사업목표 명확성	○ 기술검증사업 목표와 추진 필요성 ○ 기술검증사업 목표의 타당성·명확성(AS-IS, TO-BE)	10
	기술 준비도	○ 최소실행가능제품(MVP) 구체성 및 적정성	10
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및 사업 수행의지 (35)	사업목표 달성 가능성	○ 사업수행기관 구성 및 역할분담, 협력체계 ○ 세부수행계획 추진방안의 적절성(구체화 및 체계화)	15
	사업 추진의지	○ 사업수행기관과 참여인력에 대한 수행 역량(전문성) ○ 사전 사업적 준비 여부(기술검증 이후 확산이 가능한 근거) ○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수행 및 관리 경험	10
		○ 수요기관(테스트베드) 역할에 대한 구체성 및 적정성 - 제안과제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환경 제공(수요 (테스트베드) 기관 기술·서비스 구축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)	5
		○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비 운영 적정성	5
기술검증의 구체성·실행가능성 (35)	기술검증 계획 평가	○ 기술검증을 위한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달성 가능성 ○ 블록체인 서비스 구성의 적합성 ○ 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와 해결 방안의 타당성 ○ 기술검증 완료 후, 기술개발 지속 방안에 대한 구체성	20
	목표 구체성 및 지표 타당성	○ 성과목표의 구체성(단기, 중기 목표에 대한 구체성) ○ 성과지표의 타당성(기술검증 목표 달성에 적합한 지표 설정과 그 지표에 대한 당위성 및 중장기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제시 등)	15
기대효과 (10)	기대 효과	○ 기술검증 완료 이후, PoC 연계 활용계획 및 상용화 계획에 대한 구체성·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기대효과	10
합 계			100

※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구분 중 배점이 큰 항목
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(동점 시, 정부 R&D 성과 연계 과제 우대)

2) 기술 역량 평가

- (개요) 서면평가 평가에서 선정된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보유 MVP 기술*(주관기관) 및 기술 역량 평가와 더불어 과제 중복 여부 평가
 - * 상기, MVP기술은 지원하는 PoC 과제와 반드시 연계가 되어져야하며, 주관기관에서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것만 MVP로 인정
- (평가대상) 서면평가 통과 과제(주관기관)
- (평가방법) 총괄책임자 발표·기술시연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
 -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
 - 「기술 역량평 평가점수」는 발표평가 합계에 반영
- (평가위원) 관련분야 산·학·연 외부전문가 5인 이상
 - ※ 평가위원 선정은 NIPA 평가지원팀에서 일괄 선정하여 위촉
- (평가기준) 보유 MVP 기술*과 기술 역량, 제안한 PoC 과제와 타 과제 간의 중복 또는 유사성 등
 - * 상기, MVP기술은 지원하는 PoC 과제와 반드시 연계가 되어져야하며, 주관기관에서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것만 MVP로 인정

평가 구분	평가 항목 및 기준		평가 점수
블록체인 기술 보유 역량(30)	보유 기술 수준	○ 기술검증에 활용될 MVP 기술 개발 수준 ○ 기술검증 사업 수행 능력 및 블록체인 기술 보유 여부 - 체인코드 설계서, 네트워크 구축 구성도 등	20
기술수행역량 (20)	기술·서비스 역량	○ PoC 기술개발 수행 및 역량(담당 인력, 보유 기술 등) - 기술검증 설계도, 투입인력 세부 R&R 등	20
	중복/유사성	○ 제안한 PoC 사업과의 연관성 및 PoC 사업 추진 적정성, 유사 사업 모델간 차별성(과제 중복지원 등)	10
합 계			50

3) 발표평가

- (개요)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과제 선정
- (평가대상) 서면평가 통과 과제(주관·참여 기관)
- (평가방법)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
 -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
 - ※ 통과기준: 기술역량평가 및 발표평가 합산 점수 70점 이상
- (평가위원) 관련분야 산·학·연 외부전문가 5인 이상
 - ※ 평가는 전자평가를 실시하며, 평가위원 선정은 NIPA 평가지원팀에서 일괄 선정하여 위촉
- (평가기준)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및 사업수행의지, 기술검증의 구체성·실현가능성, 사업 목표의 명확성, 기대효과, 블록체인 기술역량 등
 - ※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구분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

평가 구분		평 가 항 목 및 기 준		평가 점수
과제 수행 역량	사업 목표의 명확성(5)	사업목표 명확성	○ 기술검증사업 목표와 추진 필요성 ○ 기술검증사업 목표의 타당성·명확성(AS-IS, TO-BE)	5
	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및 사업 수행의지 (20)	사업목표 달성 가능성	○ 사업수행기관 구성 및 역할분담, 협력체계 ○ 세부수행계획 추진방안의 적절성(구체화 및 체계화)	5
		사업 추진의지	○ 사전 사업적 준비 여부(기술검증 이후 확산이 가능한 근거) ○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수행 및 관리 경험	5
			○ 수요기관(테스트베드) 역할에 대한 구체성 및 적정성 － 제안과제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환경 제공 (수요(테스트베드) 기관 기술·서비스 구축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)	5
			○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비 운영 적정성	5
	기술검증의 구체성·실현 가능성 (20)	기술검증 계획 평가	○ 기술검증을 위한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달성 가능성 ○ 블록체인 서비스 구성의 적합성 ○ 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와 해결 방안의 타당성 ○ 기술검증 완료 후, 기술개발 지속 방안에 대한 구체성	10
		목표 구체성 및 지표 타당성	○ 성과목표의 구체성(단기, 중기 목표에 대한 구체성) ○ 성과지표의 타당성(기술검증 목표 달성에 적합한 지표 설정과 그 지표에 대한 당위성 및 중장기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제시 등)	10
	기대 효과(5)	기대 효과	○ 기술검증 완료 이후, PoC 연계 활용계획 및 상용화 계획에 대한 구체성·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기대효과	5
①기술검증 소계				50
기술 역량	기술 역량평가(50)		○ 블록체인 기술역량평가	50
②기술역량 소계				50
합 계(①+②)				100

※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구분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(동점 시, 정부 R&D 성과 연계 과제 우대)

③ 사업비 및 기술검증 항목 심의·조정

- (개요) 발표평가결과 및 지원가능예산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
- (심의·조정대상) 기술역량평가 및 발표평가 합산점수 상위 10개 과제
- (심의·조정방법) 발표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과제별 사업범위(기술 검증 항목 등) 및 예산조정(안)을 확정된 후, 최종 지원과제 확정
- (심의·조정위원) 회계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7인 내외로 구성

3 기타 유의사항

□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

- 과제 수행기관(주관·참여기관)은 선정결과 통보 후,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
 - * 협약체결 전 정부 지원금 100%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(계약기간: 협약체결일 ~ 협약종료일+150일) 제출 필수
 - **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예산 상황,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변동(감액) 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
- 사업 수행기간 : 협약체결일 ~ '24. 11.30(토)까지

□ 사업비 편성 및 관리

- 과제 수행기관(주관·참여기관)은 사업비(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 현금)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
 - * 직접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,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
- 사업비 편성 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결과 도출을 위해 편중된 예산편성 지양
 - * 국외여비 정부출연금 기준 10% 및 인건비 정부출연금 기준 60% 이하
 - * 블록체인 컴퓨팅 자원은 정부출연금 기준 4천만원(6개월)을 이하
 - * 사업비검토 심의위원회의 검토후 최종 비목별 편성금액 조정 및 확정

- 콘소시엄 구성 시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규모는 기관별 역할,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콘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
 - * 정부출연금은 주관기관에 지원하며, 참여(공급)기관, 컴퓨팅자원 초과 비용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필수사업비에 한해서만 지원
- 콘소시엄 구성 시 편성된 사업비로 기관간 제품/시스템/서비스 등 거래 불가
-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시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

□ 기 타

- 수행과제의 성과 활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주관기관은 과제 종료 연도부터 3년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후속 조치 관련하여 업무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
- 제안과제가 클라우드를 적용하고자하는 경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
-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 NIPA(전담기관)의 사업관리시스템 활용해야 함